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2021. 9.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1-78
- 나. 제안자: 조영덕 의원 외 6명
- 다. 제안일자: 2021년 8월 31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8월 31일(화)

2. 제안사유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함.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나. 입법예고: 2021. 7. 8. ~ 7. 13. (제출된 의견 없음)
- 다. 예산 수반사항 없음

5. 검토보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고급오락장 등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1)에 따라 영업을 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2.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이와 관련하여 근거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021년 5월 21일 국회에서 개정되었는 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 오락장 등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세율을 조정하여 특별히 장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어서 2001년부터 지방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재산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을 금지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²⁾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세율을 적용하며,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입게 되는 손실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다소나마 보전시켜주는 취지이므로 동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고급 오락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동업종에 대한 특례제한 해제를 최소화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부과된 재산세의 환급 등 동 조항의 소급적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참고자료(관계법령)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 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